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011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3. 21.
판 결 선 고	2019. 4. 18.

주 문

1. 피고가 2014. 11. 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7. B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소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형태의 'C 부동산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6. 이 사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당진시 D 외 3필지와 그 지상에 조성된 골프장 건물 및 입목 등(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B 주식회사는 2010. 12. 7.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신탁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재산으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합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가 각 30% 감면됨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6호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요건으로서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감면규정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감면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제도 도입 당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등록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될 당시 이 사건 감면규정의 형식이 변경된 바 없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감면규정의 형식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조항이 정비되면서 이루어진 단순한 문구수정에 불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제·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법자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감면요건으로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자본시장법이 등록 제도를 둔 목적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 등록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은 아닌 점(자본시장법 제182조 제2항 제2호는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을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④ 집합투자기구 등록 이전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하여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집합투자업자가 이와 같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 조달한 투자금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집합투자재산이 되는 점, ⑤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여부에 따라 세제지원의 차등을 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판사 강창효

판사 이창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별지

목 록

1.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

(1) 처분일: 2014. 11. 5.

(2) 부과처분 내용(가산세 각 포함)

세목	금액(원)
취득세	873,622,900
농어촌특별세	87,362,280
등록세	873,622,880
지방교육세	174,724,570
합계	**2,009,332,630**

2. 과세대상: [](입목 및 기타)

(1) 처분일: 2014. 11. 5.

(2) 부과처분 내용(가산세 각 포함)

세목	금액(원)
취득세	104,328,710
농어촌특별세	10,432,850
합계	**114,761,5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3. 과세대상: [redacted]외 2필지(토지)

(1) 처분일: 2014. 11.5.

(2) 부과처분의 내용(가산세 각 포함)

세목	금액(원)
취득세	1,185,790
농어촌특별세	118,570
등록세	1,185,790
지방교육세	237,150
합계	**2,727,300**

끝.